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9-114호

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기간 연장공고

(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)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23호(2009.06.04.)로 중화1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40호(2013.07.2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32호(2014.06.19.)로 중화1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-52호(2015.08.1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중랑구 고시 제2018-15호(2018.03.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중랑구 고시 제2018-37호(2018.05.24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랑구 중화동 331-1번지 일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·물건 등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랑구 공고 제2019-76호(2019.01.24.)로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기간 연장공고하니, 수용재결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·물건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아래의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사 업 명 :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1-1번지 일대
3. 사업시행자 :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황병수)
4. 수용재결신청 내역 : 토지, 건물 등 (세부내역 별첨)
5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
 - 당초 : 2019.01.24. ~ 2019.02.08. (16일간)
 - **변경 : 2019.01.24. ~ 2019.02.15. (23일간)**
6. 열람장소 :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(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, 2층)

7. 열람서류 비치장소 : 열람장소(중랑구청 도시개발과) 비치

8. 본 공고내용은 토지·물건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등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 끝.